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20일
복 지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8일, 이인식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5월 28일

다. 상정일자 :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6월 20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 보장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생활권과 삶의 질 향상 및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3)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관련 사업(안 제4조)

4)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및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유로운 출입 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 받은 보조견으로 규정함

○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

구분	내용
시각장애인 안내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청각장애인 보조견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지체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에게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치료도우미견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출처 :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3. 발행)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

다)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사업 및 지원(안 제4조, 제5조)

○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홍보, 교육, 정보제공 등 사업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3) 검토 의견

○ 장애인 보조견은 법령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특수 목적견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보조견 표지, 발급절차, 훈련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일상생활의 출입 보장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애인 이동권 및 복지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